

## 2026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공동연구 지원사업 공고

「2026년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공동연구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2월 27일

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 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구 자 균

### 1. 사업목적

-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

### 2.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 애로기술에 대한 연구를 희망하는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

- 지원내용 :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(주관연구개발기관)와 중소기업 (공동연구개발기관)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연구\* 수행 지원

\* 기업 수요 기반 R&D 기획 및 기술개발 방향 설정 자문, 성능 개선 및 시제품 구현 과정에 대한 기술자문(기구설계, 목업제작, 금형, 3D프린팅, 회로설계 등 포함) 등

※ 필요시 중소기업 애로기술과 기술개발을 수행할 과학기술인 단체의 컨소시엄 구성을 사전에 지원받을 수 있음(문의 : 02-3460-9064, 9038)

○ 지원규모 :

구분	선정과제수	정부출연 / 민간부담비율*	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
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공동연구 지원사업	10개	75% / 25%	9개월 이내, 최대 3,000만원

\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, 민간부담금 부담 의무가 있음

※ 민간부담비율 25% 중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

○ 지원방식 :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부출연금 전액을 지원받아 연구수행

### 3. 신청자격

○ (주관연구개발기관) 고경력 과학기술인(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제17조)이 연구인력의 50% 이상 또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\*,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\*\*

※ 참여연구원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하며, 고경력과학기술인(이공계지원법 시행령 제17조)으로 한정

\*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(www.setcoop.net)에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

\*\*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: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(법인 설립, 연구개발과제 진행 이력 등 별도 증빙서류 제출)

○ (공동연구개발기관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\*

\*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

### 4. 신청방법

○ 접수기간 : 2026. 3. 3. ~ 2026. 4. 3.

○ 신청방법 : ReSEAT 홈페이지(www.reseat.or.kr) 온라인 과제 신청

※ ReSEAT 홈페이지(www.reseat.or.kr) 회원가입 완료 후 과제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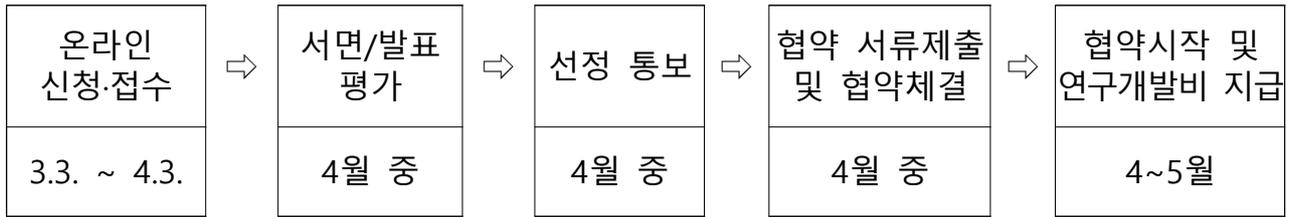
☞ www.reseat.or.kr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지원사업 신청하기 → 온라인 내용입력

○ 제출서류 : 모든 파일은 ReSEAT 홈페이지 첨부 및 제출

서류명	비고
지원사업 계획서	붙임1
연구개발 계획서	붙임2
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붙임3
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	붙임4
참여자격 확인서	붙임5 (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은 미제출)
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	붙임6
청렴서약서	붙임7
연구개발경력증명서	붙임8 (해당 시 작성)
과제 중복성 검토 결과	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 <a href="https://www.ntis.go.kr">https://www.ntis.go.kr</a> )에서 제안과제에 대해 차별성검토 실시한 결과 출력물 제출 * 차별성검토 기준 40점으로 설정하여 조회한 결과가 "차별성(유사)과제 수" "0건"으로 나와야 함
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재무제표	표지(회계사 직인 포함), 재무상태표(표준대차대조표), 손익 계산서(표준손익계산서) *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기관 및 상장사(거래소코스닥) 제출 불필요, 그 외 기업은 제출(최근 2개 회계연도말 결산) * 직전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무사 확인을 받은 가결산 자료 제출 주관, 공동연구개발기관(해당시) 모두 제출
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	주관, 공동연구개발기관(해당시) 모두 제출
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	공동연구개발기관만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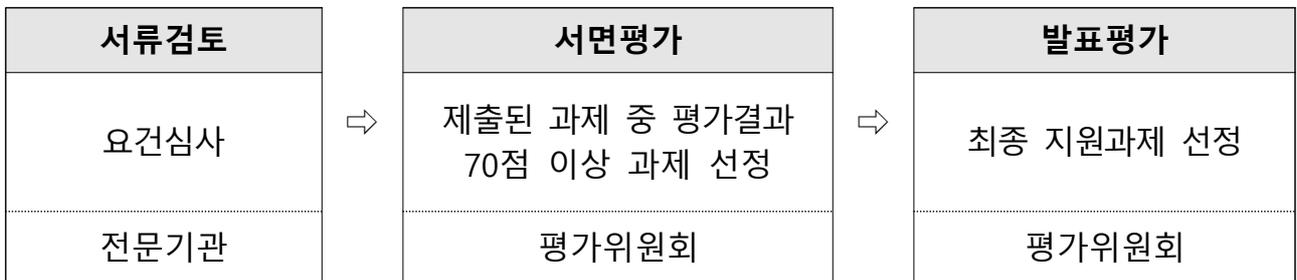
## 5. 선정방법 및 절차

### ○ 선정절차



\*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
### ○ 평가절차



※ 신청과제 수가 선정과제 수의 3배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가능

### ○ 평가기준

구분(배점)	평가지표
공동연구 추진목표 및 구성의 적절성(20)	공동연구 목표의 명확성 및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
	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
사업 수행능력(20)	참여기관의 기술·사업 수행역량
	추진체계 및 수행계획의 실현 가능성
충실성(30)	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
성과확산(25)	기술 적용 및 현장 활용 전략의 타당성
	기술애로 해결 성과의 확산 가능성
자금집행계획(5)	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

## 6. R&D 기술료

- (기술료 징수 대상) 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’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,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, ‘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’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

연구개발기관유형	중소기업
기술료 상한	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%

### - 기술료 산정기준

연구개발기관유형	중소기업
①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	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.5%
② 직접 실시한 경우	(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)의 2.5%

- ※ '기술기여도'는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, 기여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
- 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, 기술료 납부 의무가 있음
- (미납기업 제재)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2조(참여제한 등) 및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라,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

## 7. 유의사항

-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의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
- 공동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니어 과학기술인 중소기업 단기연구원 지원사업과 중복 수행 불가
-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은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협약대상 또는 지원(후보)과제로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을 적용

## 8.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

-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(통합Ezbaro)을 통하여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)를 사용·관리하여야 함
-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)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
  - ※ 일괄지급방식 :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,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
  - ※ 건별지급방식 :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,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(증명자료를 포함)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

## 9. 문의처

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연락처: 02-3460-9063, 9066, 9068)

- 붙임
1. 지원사업 계획서 1부
  2. 연구개발 계획서 1부
  3.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
  4.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 1부
  5. 참여자격 확인서 1부
  6. 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
  7. 청렴서약서 1부
  8. 연구개발경력증명서 1부. 끝.